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수칙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수칙

1. 운영시간

- (1) 월요일 ~ 토요일 10:00~22:00
- (2) 심야대관 운영 22:00~01:00

2. 휴관일

- (1) 매주 일요일
- (2) 법정공휴일 및 정부지정공휴일
- (3)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 시
- (4) 기타 운영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대관목적 및 용도

- (1) 공연예술 관련 사업과 창작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그 외 공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관함
- (2) 연습실과 대명홀은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관련 연습, 리허설 등 사용 목적에 한하여 대관. 단,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는 불가함
- (3) 세미나실은 대본 리딩, 소규모 세미나, 회의, 스터디 등 공연예술 관련 사용 목적에 한하여 대관하며 연습공간 당일 사용자에게 한해 무상으로 대관함(같은 날짜, 같은 시간의 경우 선착순 우선순위로 배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질병 진정 시까지 세미나실 폐쇄

4. 장비설치 및 시설관리

- (1) 대관단체는 연습공간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장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함
- (2) 시설의 변경이나 장비 설치의 승인 시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및 철거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의 훼손이 있을 시 사용자가 이를 배상토록 함
-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본 시설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8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5. 대관시간 및 사용료

- (1) 대관시간은 사용시간 외에 ‘연습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함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후 대관이 제한됨
- (2) 대관시간은 1일 3시간씩 3타임을 기본으로 하며 대관료는 아래와 같음

대관시간 및 대관료

TIME	대연습실 (2층)	중연습실 A (3층)	중연습실 B (3층)	중연습실 (1층)	소연습실 (1층)	대명홀 (지하1층)	세미나실 (1층)
	245.64m ² (74평)	122.82m ² (37평)	122.82m ² (37평)	100.17m ² (30평)	51.75m ² (15평)	459.90m ² (139.1평)	50.02m ² (15평)
오전 (10:00~13:00)	20,000		10,000원		5,000원	15,000원	무료
오후 (14:00~17:00)							
야간 (18:00~22:00)							
심야 (22:00~01:00) (전일 미포함)	20,000		10,000원		5,000원	15,000원	
전일 (10:00~22:00)	40,000원		20,000원		10,000원	45,000원 (30,000원)	

- (3) 한 단체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을 제한하며,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대관신청이 가능함. 단, 상황에 따라 장기대관 (특정 단체가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일정 대관 신청 등)의 경우 선정사유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할 경우 대관신청이 가능함
- (4) 대관료는 정해진 최초 사용예정일 전일 17시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대관취소 및 제한

- (1)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음
-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 3) 정해진 기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 4) 사용권을 타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5) 타 대관단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의 유해행위로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7)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8) 개인 연습 및 강습 목적의 대관일 경우
 - 9)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연습실, 세미나실 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1)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일 경우(예 : 공개오디션 등)
 - 12) 대관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일 경우
 - 13)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 14)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대관의 경우
 - 15)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당일 및 무단 대관 취소 5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6개월간 대관이 제한됨

7. 대관변경 및 취소

- (1) 대관 변경 요청 시 대관자는 승인된 내용의 변경 가능 시간 및 공간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단, 연습실 사용 10일 전이라도 대관료가 입금된 이후에는 불가함
- (2) 대관자가 대관 담당자에게 대관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취소를 재단에 통보한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1) 대관자가 대관료 납입 후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취소한 경우 납입금의 100%,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납입금의 50%를 환불함. 그 이후 취소할 경우 대관료는 환불되지 않음
 - 2)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대구문화재단의 귀책 사유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관취소 및 계약 해제 시에는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환불함

8. 부대 설비

구 분	내 용
공통 편의시설	주차장(총 10대), 샤워실(층별 남녀 각 1실/ 대명홀 제외), 탈의실(각 실별), 창고, 정수기, 사물함(정기대관 단체에 한함)
연습실 설비	피아노(소연습실-디지털), 음향기기(소연습실 제외), 냉난방기, 책상, 의자, 보면대, 전면거울 및 무용바

대명홀 설비	디지털피아노, 음향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 의자, 보면대, 객석, 정수기
세미나실 설비	마이크, 강연대, 화이트보드, 스크린, 의자, 책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진정시까지 세미나실, 샤워실 폐쇄

8. 심야대관

- (1)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2021년 3월 ~ 12월 / 22:00 ~ 익일 01:00까지
- (2) 심야대관의 경우 연습공간 및 대명홀 전일대관 사용료 미포함
- (3)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함. 미성년자 출입 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및 고발 조치. 이에 대한 책임은 미성년자와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짐
- (4) 심야대관 이용자는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관리자에게 협조해야 함. 비협조 및 미성년자 미증명 시 시설 출입 불가.

9. 코로나19 관련

- (1)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함.
불이행 시 대관 즉시 취소 및 추후 대관 제한됨
 - 추후 감염자 발생 시 귀하의 개인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항(정보제공요청)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대상일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및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처할 수 있음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규정 준수 서약서

본 단체는 귀 재단의 공연예술연습공간을 대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내규'에 따라 재단이 결정하며, 본 단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이며, 대관승인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겠습니다.

3. 대관시설 확인

본 단체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대관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관 및 대관 신청의 취소

본 단체가 대관 및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구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내규에 따른 절차에 따를 것이며,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내용도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5. 대관 해약 및 정지명령

1)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단의 사용승인 취소, 변경 또는 사용정지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 ①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연습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②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연습실 사용 개시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③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안질서유지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④ 코로나19로 인한 연습공간 수칙 미준수로 인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준수되지 아닐 때

6.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연습, 부대행사 등을 위해 기자재 및 소품을 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며, 대관 종료 후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만약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재단의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차후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철수가 지연된 경우 원상 복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전 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겠습니다.

재단이 정하는 연습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8.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관리 수칙

- 1) 출입·퇴실 시 사용대장을 작성한다.
- 2) 건물 전 구역에서 금연한다.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연습실 내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4) 연습실 장비 및 비품의 반출을 금지한다.
- 5) 모든 시설 내 음주 및 고성방가를 금지한다.
- 6) 지정된 연습실 외 다른 연습실 사용을 금지한다.
- 7) 시설물에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과 화기성 물질 및 전열기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 8) 실시시간을 엄수하며 퇴실 시 전열기, 냉·난방기, 전선의 안전 점검을 한다.
- 9) 설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장비를 설치할 경우 운영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공연의 광고 및 홍보용 POP물의 설치를 원할 시 반드시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11)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내 다른 단체의 연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2) 공연준비 및 연습을 방송 또는 녹화할 때는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 연습실 이용 후 현장 정리 및 사용공간의 정비로 쾌적한 연습실을 유지한다.
- 14) 연습실 이용의 기록을 위해 담당자의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허가한다.

8-1.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수칙

- 1) 마스크 미착용시 연습공간 출입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상황 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2)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중에서 착용한다.
 - 2-1) 페이스 실드 착용 금지
 - 2-2) 구관악기 연주의 경우 악기 연주를 제외한 시간 이외 마스크 착용
- 3) 생활방역 거리두기로 인한 연습공간 구역(2m)를 유지하며 연습한다.
-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CCTV 확인 및 녹화, 캡처에 관해 동의한다.
- 5)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발열체크 외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습공간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불이행 시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 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연습공간 수칙 미준수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본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 단체 및 개인이 책임진다.
- 7) 연습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9.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담당자의 안내와 정당한 통제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위의 규정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단체 명 : _____

(인/직인)

대표자(실무자) 명 : _____